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660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원 고¹⁾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백○○, 윤○○, 허○○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B 주식회사가 피고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는 2023. 3. 16. 이 법원의 이송결정으로 광주 지방법원(행정부)으로 이송되었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²⁾는 2012. 7. 25. 설립된 발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은 복합화력발전소인 C발전소, D발전소(이하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구분		설비용량	비고
C발전소	화력 발전설비(가스터빈 등)	296MW × 1기	화력발전소
	폐열 발전설비(증기터빈 등)	154MW × 1기	폐열발전소
D발전소	화력 발전설비(가스터빈 등)	268MW × 1기	화력발전소
	폐열 발전설비(증기터빈 등)	132MW × 1기	폐열발전소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①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Gas Turbine) 등 화력 발전설비(이하 '1차 발전설비'라 한다)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한 다음(이하 '1차 생산전력'이라 하고, 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1차 발전단계'라 한다), ②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된 배기열을 포집해 물을 끓여 발생시킨 증기로 증기터빈(Steam Turbine) 등 폐열 발전설비(이하 '2차 발전설비'라 한다)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이하 '2차 생산전력'이라 하고, 이를 생산하는 설비를 '2차 발전설비'라 하며, 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2차 발전단계'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월부터 2021. 2월 사이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6호(이하 '이 사건 시

2) A 주식회사에서 2020. 1월 현재의 상호(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행령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 규정과 총칭하는 경우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2,117,340,9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차 생산전력은 1차 생산전력과 달리 화석연료의 연소가 아닌 배기열로 발생시킨 증기로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고, 2차 생산전력은 1차 발전설비(화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화력발전소)가 아닌 2차 발전설비(폐열 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폐열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므로, 2차 생산전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2016. 4월부터 2021. 3월분까지)가 부과될 수 없다.

마. 피고는 2021. 6.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납세의무자는 ①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② '발전'을 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기에 LNG 복합발전 사업자는 1차 발전에서 LNG를 이용하였으므로 ①요건을 충족하였고, 발전사업자이므로 ②요건도 당연히 충족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호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한 바, LNG 복합발전의 1·2차 발전은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이루는 것이고, 화석연료의 직·간접 또는 1·2차 이용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2차 발전은 '화력발전'으로서 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기에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함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22. 6.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이고, ②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2차 발전단계와 1차 발전단계는 별도의 발전단계이고, 2차 발전단계에서는 그 어떤 화석연료의 연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차 발전단계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차 발전단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2차 생산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취지에 반하기도 한다. 결국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만든 2차 생산전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률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 그리고 폐열 발전설비인 2차 발전설비는 화력발전 설비가 아니므로 2차 생산전력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6,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생산전력 역시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가 정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한 경우에 포함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①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원자력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함에도 과세대상에도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중립성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인 점, ②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km를 넘어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외부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거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약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매우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연혁,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오염자부담원칙과 환경오염비용 부담뿐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측면도 보유한 목적세의 일종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금 제도(하수도법 제61조)와 달리 위와 같은 목적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는 '발전



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화력발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중 화력발전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화력발전'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따위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원동기를 써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일으키는 방식. 기력 발전, 가스 터빈 발전, 내연력 발전 따위가 있다.', '화석연료'를 '지질 시대에 생물이 땅속에 묻히어 화석같이 굳어져 오늘날 연료로 이용하는 물질. 석탄 따위가 이에 속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차 생산전력은 1차 생산전력과 달리 화석연료의 연소가 아닌 배기열(폐열)로 발생시킨 증기로 2차 발전설비를 가동시켜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가 정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화력발전의 개념과 같이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기체를 이용한 발전, 즉 화석연료가 발전과정에서 연소되면서 전환된 고온고압의 기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 즉 배기열 등을 이용한 것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1차 발전단계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해 2차 발전설비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도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가 정한 화력발전에 포함되고, 그 전력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가 정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한다.

라. 지방세법은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시민이 알기 쉽



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를 개정하였고,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제2호 나목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의 개념을 보다 넓은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구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과세근거로 하여 지역적 보상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화력발전을 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얻는 이익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는데,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발전단계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단계 역시 화력발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2차 생산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화력발전소 이외의 시설에서 생성된 폐열을 이용한 폐열발전도 가능하고, 사업자가 최초에는 화력발전소만 운영하다 추후 설비 증설 등을 통해



폐열발전을 결합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2차 발전설비가 정유 회사 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열을 통해 가동한 설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다면 1차 발전설비와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해 보이는 점, 원고가 1, 2차 각 생산전력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여 2차 발전설비가 1차 발전설비와 무관한 별개의 설비로 볼 수는 없는 점, 1차 발전단계에서 나온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단계 역시 화력발전의 개념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생산전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에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고, 구 지방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가 드는 각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두28684, 2012두19847, 2012두10703)은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7

판사 조○○

판사 차○○



별지1

피고 ○○시장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순 번	세목	처분일	귀속연도	당초 신고·납부 세액	감액 경정청구액	거부처분액
1	지역 자원시 설세	2021. 6. 23.	2016. 3. ~ 2016. 12.	627,200,900	203,023,010	203,023,010
2			2017. 1. ~ 2017. 12.	1,363,138,150	441,854,710	441,854,710
3			2018. 1. ~ 2018. 12.	1,533,018,640	491,300,290	491,300,290
4			2019. 1. ~ 2019. 12.	1,422,470,700	457,642,460	457,642,460
5			2020. 1. ~ 2020. 12.	1,449,722,360	453,974,900	453,974,900
6			2021. 1. ~ 2021. 2.	265,884,310	69,545,620	69,545,620
합계				6,661,435,060	2,117,340,990	2,117,340,990

끝.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채수)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채광)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 ② 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레저세
 - 다. 담배소비세
 - 라. 지방소비세
 - 마. 주민세
 -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은 다음 각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해양에너지발전설비·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 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하는 곳을 말한다.

■ ○○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절전 설비 등의 지원 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지역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
5. 「○○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6. 온실가스 대응 및 적응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
7.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사업 및 이차보전 사업
8. 수소, 2차 전지 등 에너지산업육성 관련 사업
9. 지하수 정화 사업 및 주변 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10. 발전용수 및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11.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끝.